제1장 사업경영지역, 피보험자 및 보험목적의 범위와 보험종류의 세목

제1조 (사업경영지역)

사업경영지역은 제2조(단체 및 피보험단체)에서 규정한 단체에 소속하고, 장래 그 단체로부터 퇴직급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가 생활하는 전 지역으로 한다.

제2조 (단체 및 피보험단체)

① 이 보험에서 “단체” 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의 설정 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이 보험에서 “피보험단체”라 함은 동일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 (보험의 종류 및 세목)

① 보험의 종류
퇴직보험

② 보험종목의 명칭
퇴직보험

③ 보험목적의 범위
1. 보험목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피보험자의 단체로부터 퇴직
2. 제1호 이외에 필요에 따라 보험목적을 추가할 수 있다.

④ 보험료의 납입주기
제12조(보험계약의 체결절차)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또는 연납 중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 납입기간은 전기납으로 한다.

⑤ 보험료 차등에 관한 사항
기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준비금이 전환, 회사내 다른 퇴직보험 또는 무배당퇴직보험으로부터의 이전 및 보통약관 제21조(보험계약의 승계)로 인한 계약단체간 준비금 이전시에는 보험료기준 예정사업비율을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보험의 세목
1. 확정금리형
   예정이율(준비금적립이율)로 책임준비금을 부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2. 금리연동형
회사가 매월 정하는 공시이율로 해당월(이율이 공시된 날로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확정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부리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공시이율의 월별 적용내역을 연 2회 서면 또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등)으로 통지하며,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을 실시한다.

제4조 (재정방식)

① 재정방식이란 장래에 지급될 퇴직급부의 재원적립을 위한 보험료 산출방식을 말하며, 이 보험에서 재정방식은 특정연령방식으로 한다.

② 특정연령방식의 특정연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한다.
1. 단체의 직전 3년이내 신규 보험가입자의 평균 보험가입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2. 단체의 직전 3년이내 신규 보험가입자중 최빈 보험가입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3. 단체의 직전 3년이내 신규 보험가입자중 최저 보험가입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4. 관련자료의 부실, 부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여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5조 (재정결산 및 재계산)

① 재정결산
회사는 매년 재정결산일(계약단체의 보험년도말일 또는 사업년도말일)에 계약단체에 연금재정의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재정결산을 실시한다.

② 재계산
1. 정기 재계산
매5년마다 계약응당일{또는 퇴직보험 계약협정서(이하 “협정서”라 한다)에 정한 날} 기준으로 실시하며, 예정기초율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예정사망률, 표준퇴직률, 표준승급률 변경시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재계산시 변경된 예정기초율을 적용한다.
2. 임시 재계산
장래급부채무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퇴직금 제도변경, 명예퇴직, 정리해고, 퇴직금 중간정산 등)가 발생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6조 (급부의 종류 및 구성)

① 정년퇴직급부

② 중도퇴직급부
③ 사망퇴직급부
④ 기타 해당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상에 정한 퇴직급부

제7조 (급부의 산정방법)
이 보험의 급부의 산정방법은 해당 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급부의 지급기준)
이 보험의 급부의 지급기준은 적립비율(「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장 목표적립비율 및 보험가입금액

제9조 (목표적립비율)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목표적립비율(퇴직금제도를 퇴직보험으로 이행시 해당비율)을 결정하여 협정서에 기재하며, 계약기간중 피보험자의 대표자와 협의한 후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비율을 상향 또는 조정시점의 적립비율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피보험자의 선택과 보험계약의 체결절차

제10조 (피보험자의 선택)
피보험자의 선택은 퇴직보험계약청약서(이하「청약서」라 한다) 및 협정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시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조사한 후 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피보험자의 추가 가입)
① 추가가입대상자는 계약체결이후 새로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격 취득자중 해당단체의 오류 등에 의한 미가입자로 한다.

②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추가가입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추가가입시점 적용 적립비율 해당액을 납입토록 한다.

③ 추가가입자에 대한 기본보험료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기

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한다.

④ 추가가입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피보험자명부를 추가 교부하거나 정정한다

제12조 (보험계약의 체결절차)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1낙(承諾)으로 이루어진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그 청약을 철회(撤回) 할 수 있다. 다만, 청약철회 전에 퇴직급부의 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③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는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및 피보험자명부를 계약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의 대표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계약자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4장 보험료의 영수,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 등의 환급

제13조 (보험료의 종류)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할 때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협정서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재정안정화보험료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3. 연금충실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기 위한 보험료로서 퇴직금관련 규정에 정한 퇴직금과 이 계약의 퇴직급부금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하며, 기업이 납입하는 보험료이다.

제14조 (보험료의 영수)

① 보험료의 수금방법은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계약자의 직접납입, 금융기관을 통한 납입 또는 회사의 방문수금 등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당해 보험년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를 미리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보험료는 납입주기에 따른 납입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한다.

③ 회사는 보험료를 인수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15조 (급부 등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급부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1. 퇴직급부 또는 해약환급금 청구서(회사양식)
2. 단체 대표자 발행의 퇴직증명서 및 퇴직금 계산서(퇴직의 경우)
3.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
4. 수익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피보험자의 해지동의서 등(청약철회, 해지, 이전의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금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계산이율(이하 “보험료계산이율”이라 한다)+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제16조 (급부의 지급방법)

이 보험의 급부의 지급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연금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다.

① 퇴직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수익자)는 퇴직금(중간정산금액 및 연금충실화보험료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거치기간중의 적립이율은 확정금리형 또는 금리연동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는 거치기간중 언제든지 거치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다.

④ 연금의 지급형태는 확정연금형으로 하며 정액형, 체증형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

⑤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 25년 이내로 한다.

⑥ 연금의 지급방법은 월단위연금, 3개월단위연금, 6개월단위연금, 연단위연금으로 한다.

⑦ 각 피보험자(수익자)는 연금수급권 취득시 연금의 지급형태, 지급기간,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택한 연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금재원을 인수하여 지급을 보장토록 한다.

⑧ 계약단체의 퇴직급부가 일시금인 경우에는 그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급부가 연금인 경우에는 급부수급권 취득시점의 보험료계산이율로 산출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인수하는 연금재원으로 한다.

⑨ 연금수급권 취득후 연금적용이율은 확정금리형과 연동금리형으로 한다.

1. 확정금리형
   퇴직연금의 재원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 준비금적립이율로 연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2. 연동금리형
   퇴직연금의 재원을 각 연금지급시점의 연금원자로 할당하고, 이를 각각의 연금지급시점까지 금리연동형의 준비금적립이율로 부리하여 지급한다.
   (단, 연금원자의 할당방법은 선택할 수 있음)

⑩ 각 피보험자(수익자)는 연금지급개시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⑪ 각 피보험자(수익자)는 연금지급 개시후 잔여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1. 확정금리형
   연금지급개시시점의 회사의 확정금리형의 준비금적립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2. 연동금리형
   잔여지급기간의 연금원자를 산출시점까지 금리연동형 준비금적립

이율로 부리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7조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하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한다.
(단, 이전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이전 전 회사에 다시 반환함.)

②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보험료계산이율 + 1%』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 (해약환급금의 지급)

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약환급금은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에게 계약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일로부터 1년미만에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협정서에 의한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해당 취급기관으로 이전 처리한다.

제5장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보험계약청약서 및 이에 첨부할 서류의 서식

제19조 (서식)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청약서, 협정서 및 피보험자 통지의 서식은 아래와 같다.

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서식은 별첨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청약서의 서식은 별첨 제2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협정서의 서식은 별첨 제3호의 서식으로 한다.
④ 피보험자 통지의 서식은 별첨 제4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6장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

제20조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한다. 다만, 거치연금전환제계약 및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7장 특별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 (특별계정의 설정)

이 보험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며 특별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장 약관의 규정에 의한 대출

제22조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대출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9장 기 타

제23조 (임원계약에 관한 사항)

임원의 퇴직급부액 결정방법 등이 그 단체의 종업원과 상이하여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다.

제24조 (공동인수계약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계약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취급기관(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25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 및 수익자(상속인을 포함한다.)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피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사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26조 (통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통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미리 협정서에 정한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전에 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피보험자 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를 통하여 피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③ 회사는 매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대표자에게 보험료 납부상황 및 수급예상액을 통지한다.

제27조 (근속년수 및 가입년수의 계산)

계약단체의 퇴직금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8조 (계약이전수수료의 보험세목에의 편입)

협정서에서 정한 계약이전수수료는 당해 보험세목의 수익으로 편입한다.

제29조 (기존 퇴직보험상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기존 퇴직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변경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단, 2000. 5. 31이전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의해 예정사업비율을 변경적용하며, 이 경우 매년 계약응당일 시점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 (기존 퇴직보험상품의 정기재계산에 관한 사항)

기존 퇴직보험 계약의 정기재계산일은 보험계약일(또는 직전 정기재계산일)로부터 매5년마다 계약응당일에 시행한다. 다만, 계약자가 별도로 정기재계산일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매 5년마다 시행한다.